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64호

2021.3.30.(화)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4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 고 시

제2021-15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안) 5

◆ 공 고

제2021-984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15

◆ 구 고 시

제2021-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은평구) 33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월별·분기별 자금운용계획 수립) ①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수입 및 지출관련 부서의 장은 월별 예탁계획서 또는 자금소요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출된 월별 예탁계획서 및 자금소요계획서를 감안하여 월별·분기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의 예탁을 요청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운용관에게 자금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소요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예수 및 융자기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예수 및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시장은 자금운영상 예수기간 만기일까지 또는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기일

까지 예수금 또는 융자금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융자기간 및 예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1년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 및 기간 등 별도의 융자조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정부자금 금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수 및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④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단, 융자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7조(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기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매년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의 분은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은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연체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수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그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무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시금고가 대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하여 「은행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하도록 시금고에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3호 중 “감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제8호 중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를 “기금관리 총괄”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20. 12. 31.)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월별·분기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관한 사항(제4조).

(1) (수입) 기금운용관이 월별·분기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에게 예탁하도록 함

(2) (지출) 융자신청에 대하여 기금운용관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자금 융자

라. 예수 및 융자조건, 이자계산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1) (기간)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함.

(2) (이자계산) 예수 및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

마.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제7조).

(1) 상환방법, 상환기일, 연체금 등 세부사항 규정

바. 결산보고서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제8조).

(1)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안)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1. 3. 29.)에서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고
1	노원구	상계3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104,000	
2	강동구	천호A1-1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26,549	
3	동작구	본동	본동 47번지 일대	51,696	
4	성동구	금호23	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	30,706	
5	종로구	송인동 1169	송인동 1169번지 일대	14,157	
6	양천구	신월7동-2	신월7동 941번지 일대	90,346	
7	서대문구	홍은1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11,466	
8	서대문구	충정로1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8,075	
9	서대문구	연희동721-6	연희동 721-6번지 일대	49,745	
10	송파구	거여새마을	거여동 551-14번지 일대	63,995	
11	동대문구	전농9	전농동 103-27번지 일대	44,878	
12	중랑구	중화122	중화동 122번지 일대	37,662	
13	성북구	성북1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109,336	
14	성북구	장위8	장위동 85번지 일대	116,402	
15	성북구	장위9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85,878	
16	영등포구	신길1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59,379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일 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

2. 권리기준산정일 : 2020. 9. 21.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193)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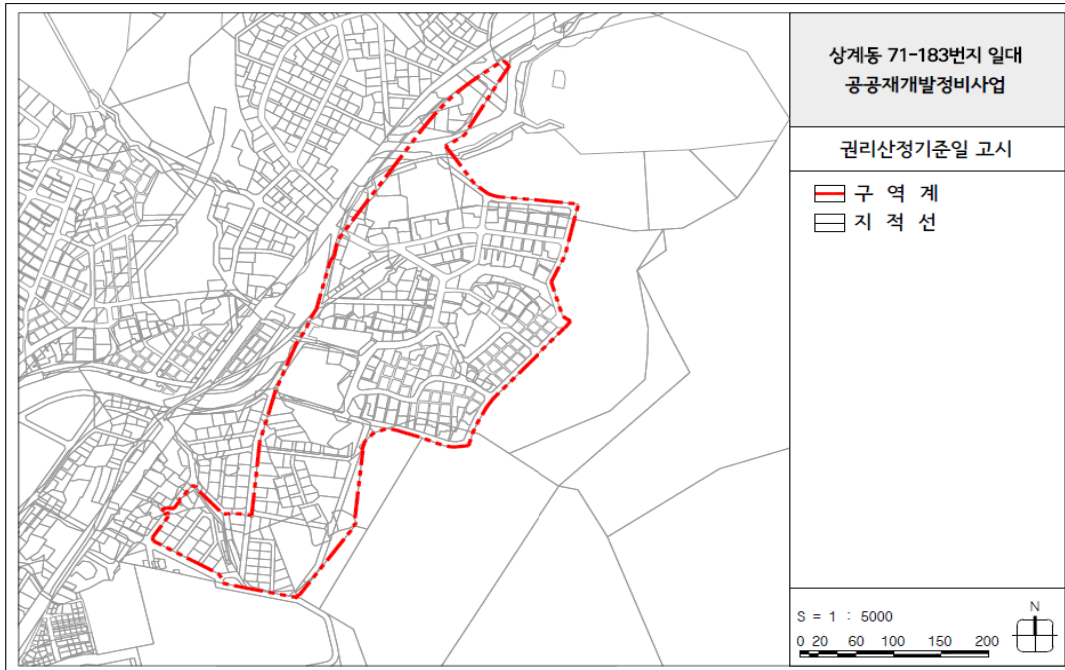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노원구	도시재생과	02-2116-3922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02-3425-5993	
동작구	도시개발과	02-820-9265	
성동구	주거정비과	02-2286-6563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83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9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02-330-1727 02-330-1556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903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666	
중랑구	주택과	02-2094-2138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34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02-2670-3804	

※ 본 고시는 향후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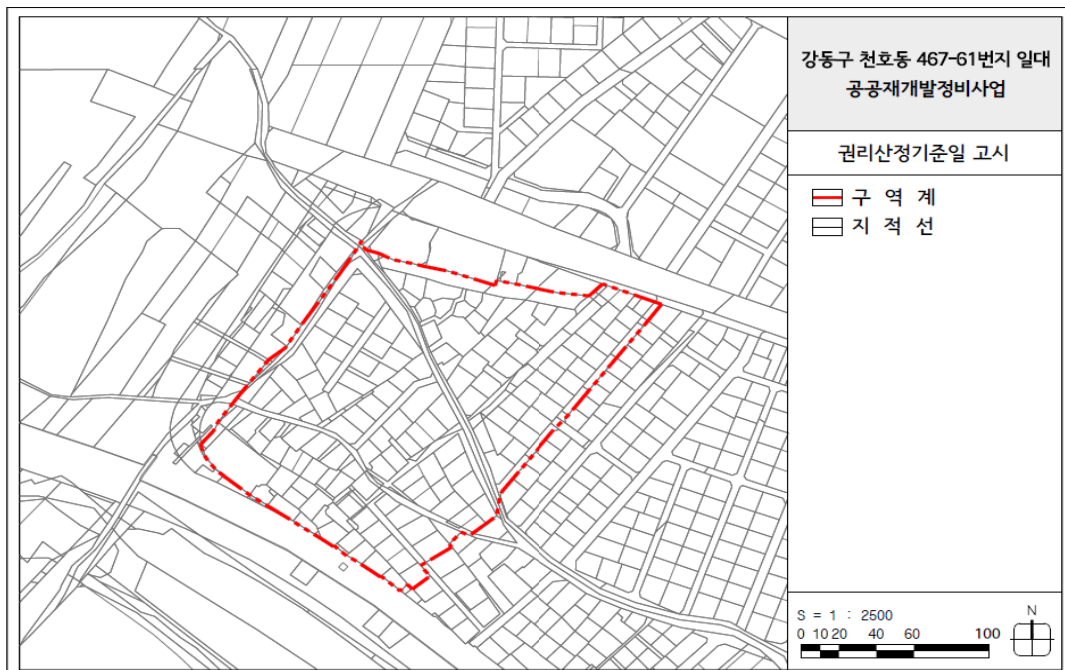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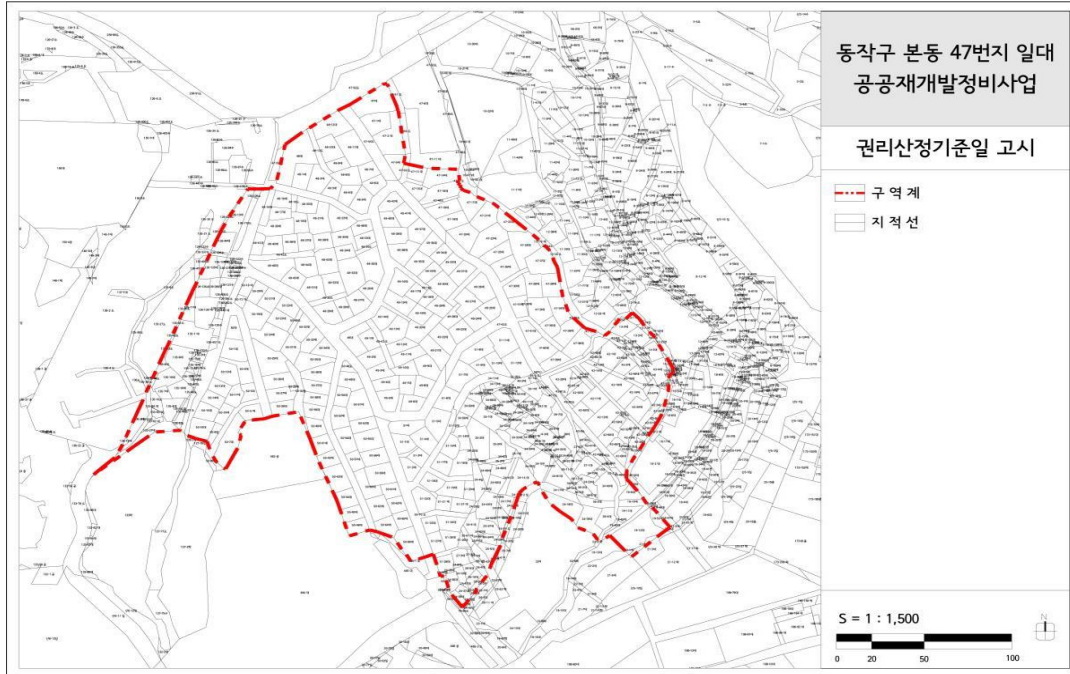
○ 상계3 (노원구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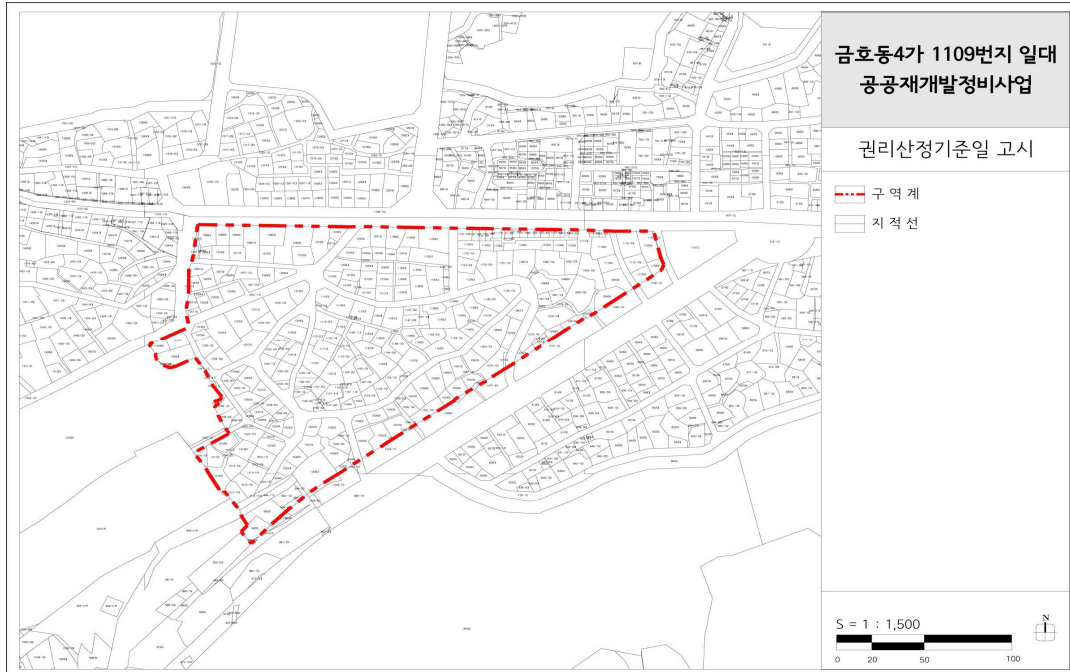
○ 천호A1-1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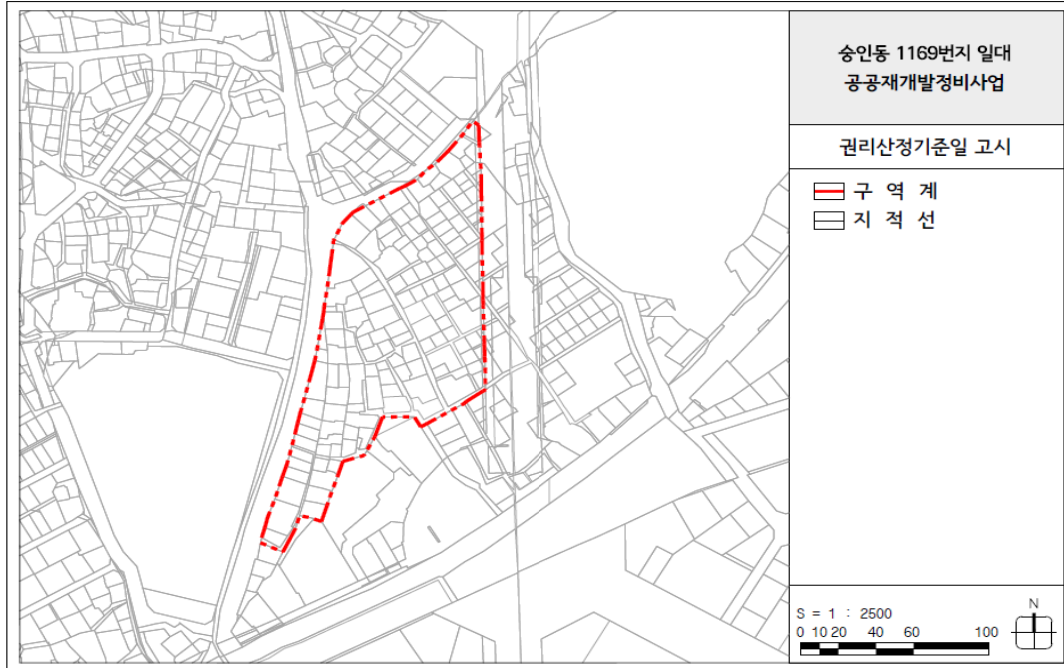
○ 본동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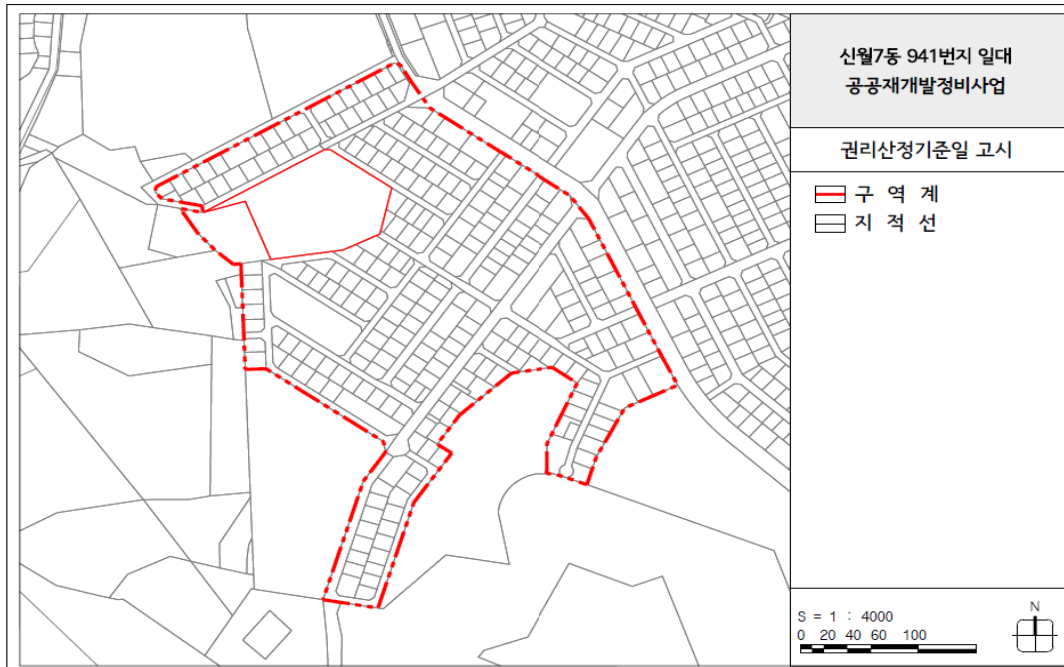
○ 금호23 (성동구 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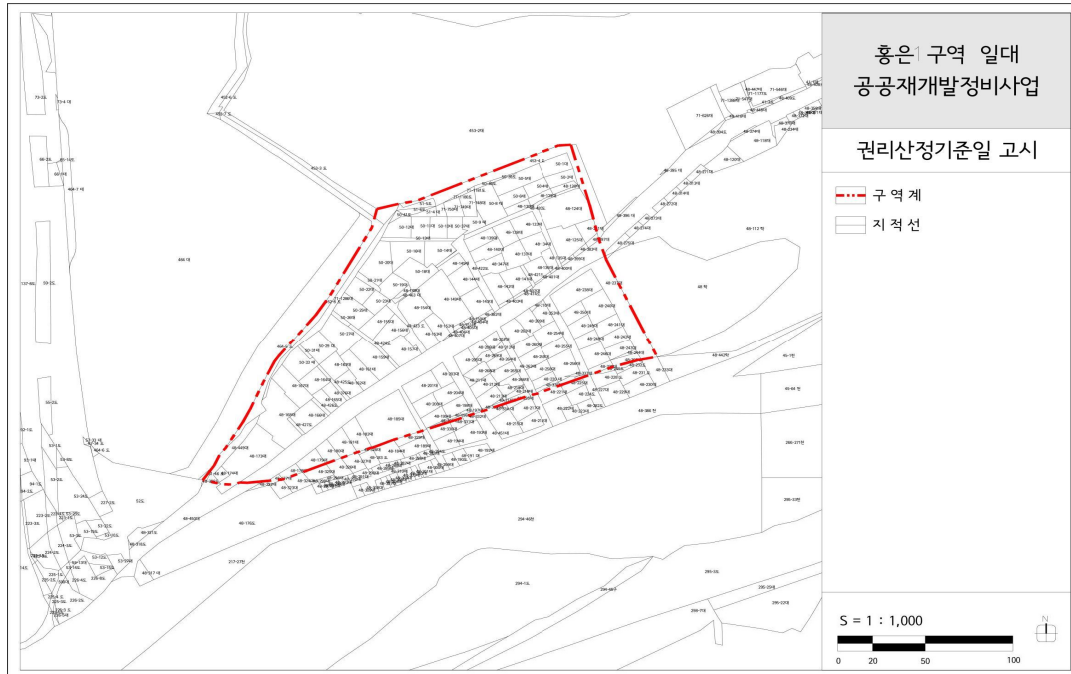
○ 송인동 1169 (종로구 송인동 1169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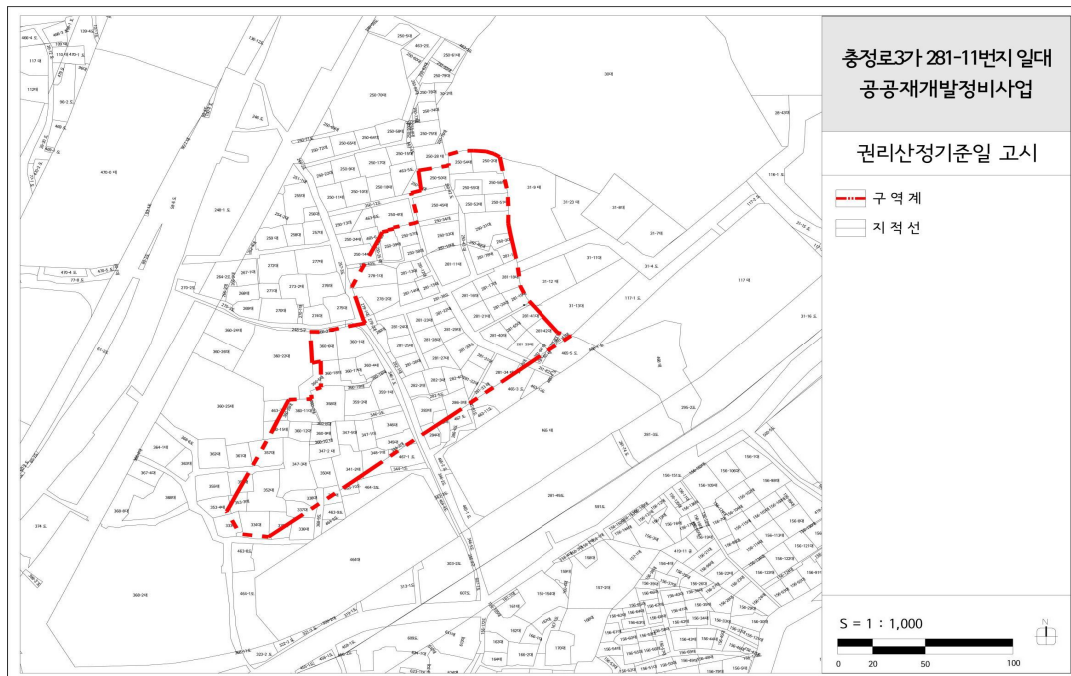
○ 신월7동-2 (양천구 신월7동 91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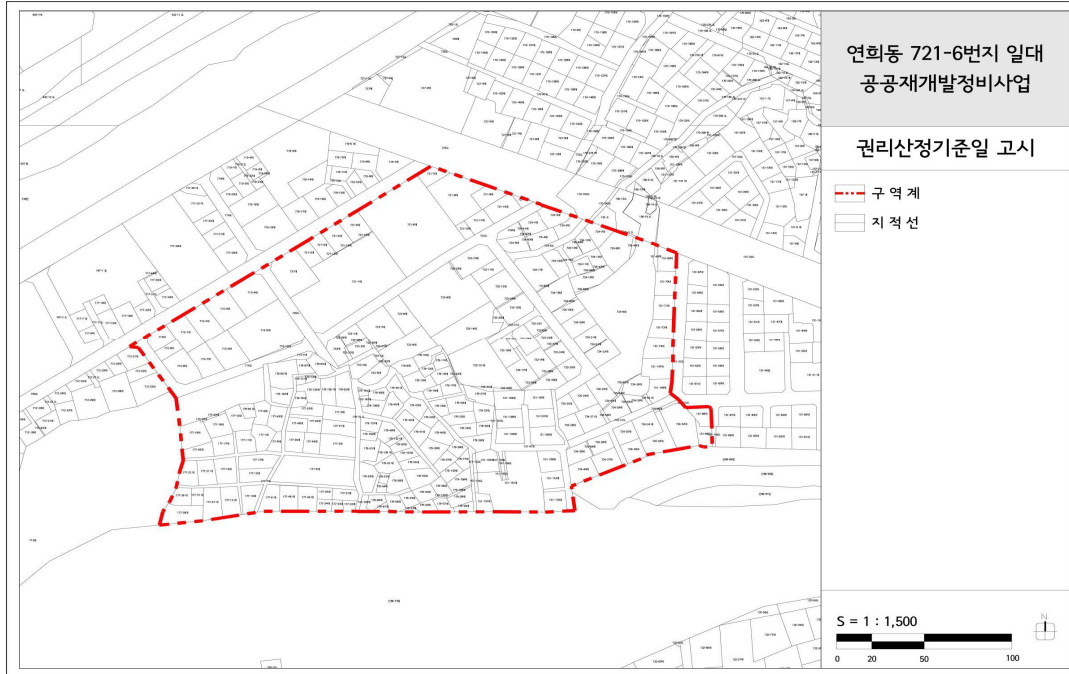
○ 홍은1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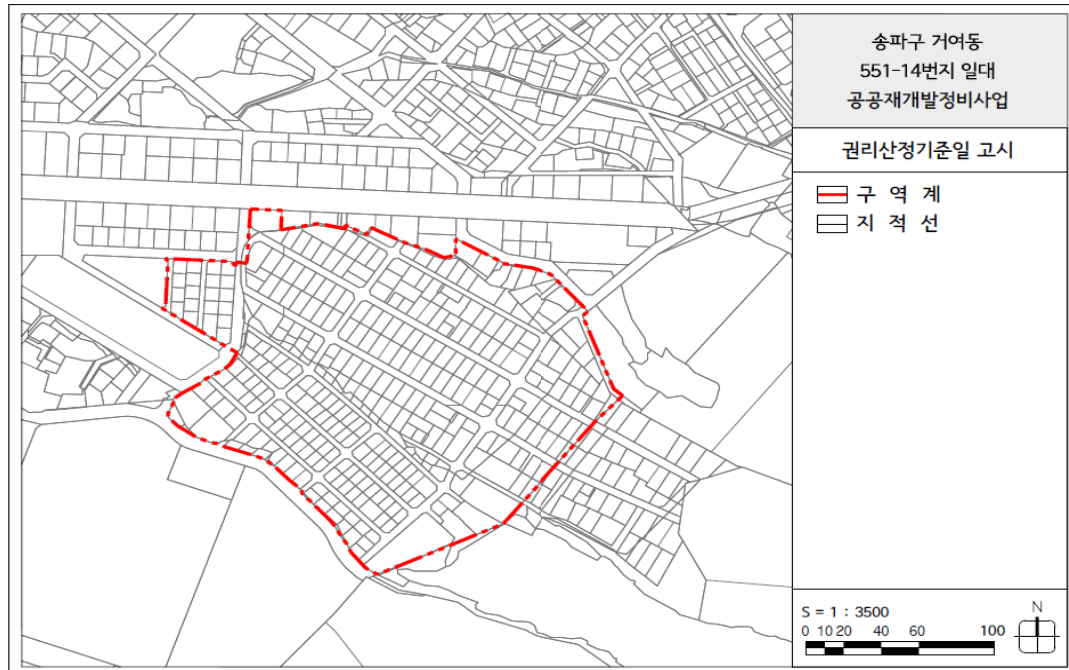
○ 충정로1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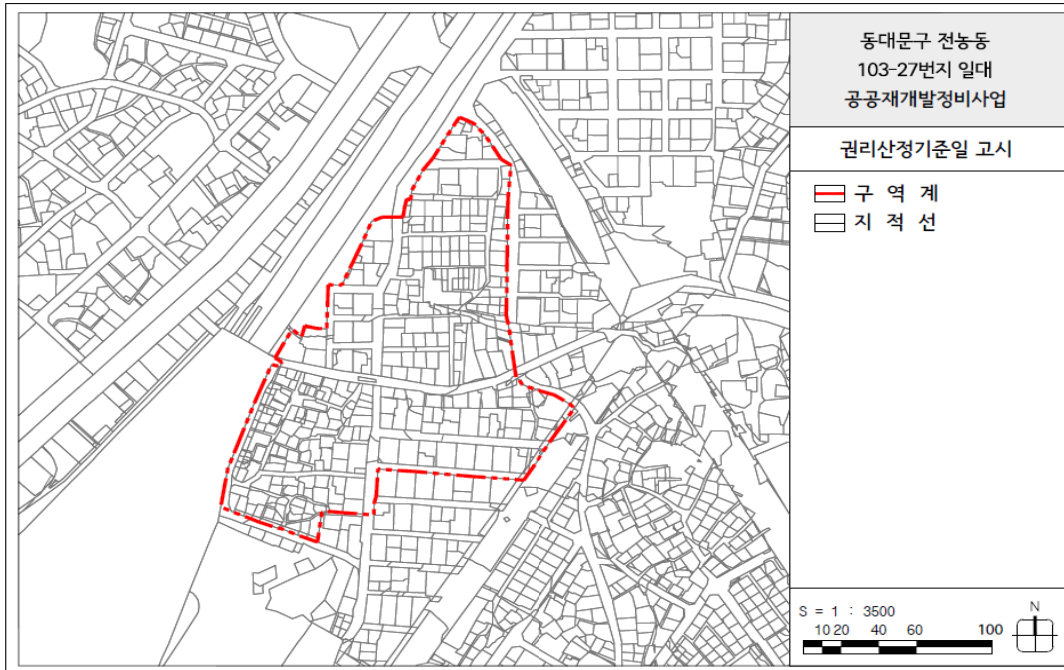
○ 연희동 721-6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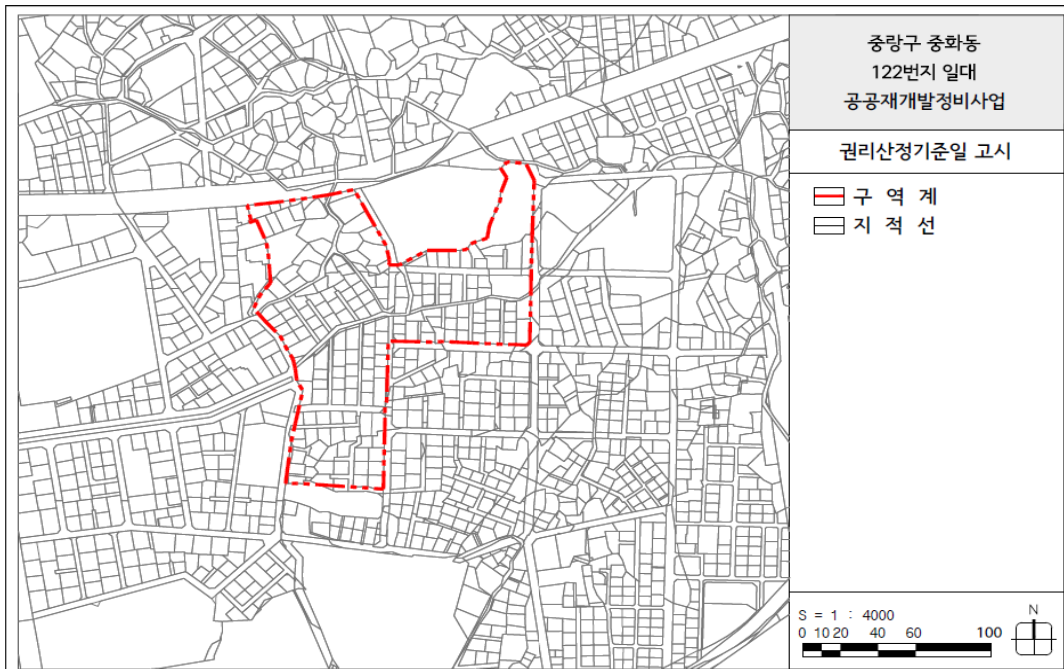
○ 거여새마을 (송파구 거여동 551-1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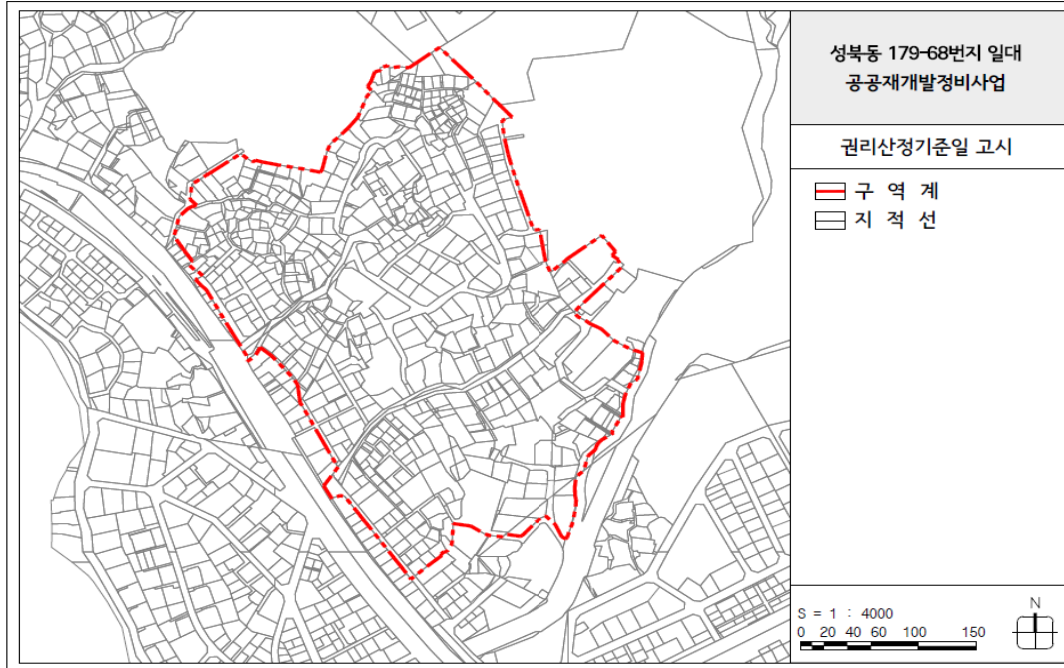
○ 전농9 (동대문구 전농동 103-27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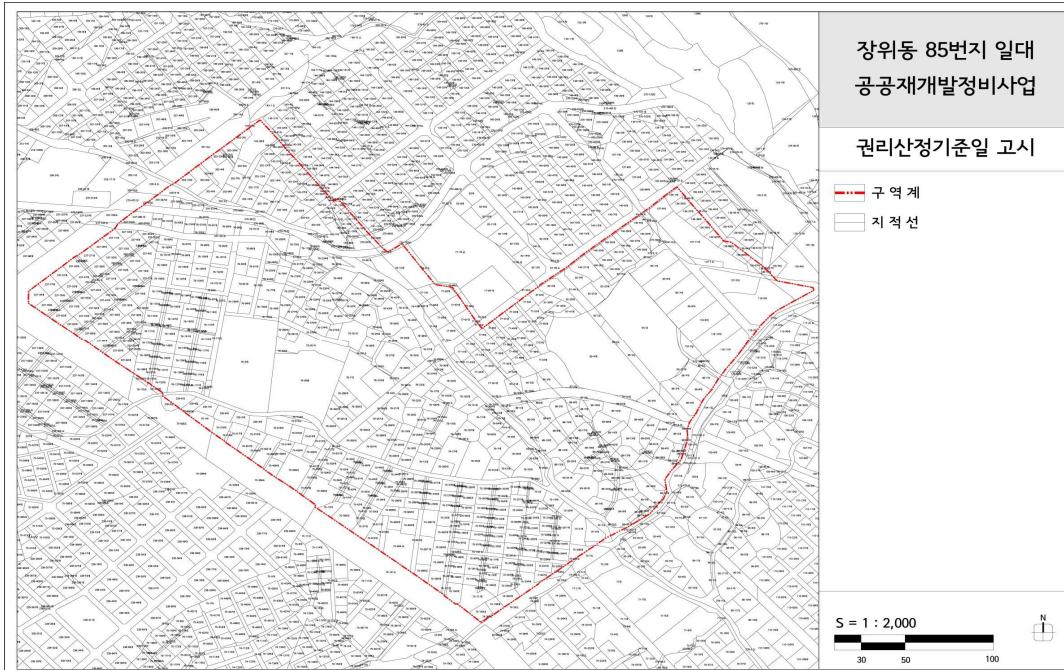
○ 중화122 (중화동 12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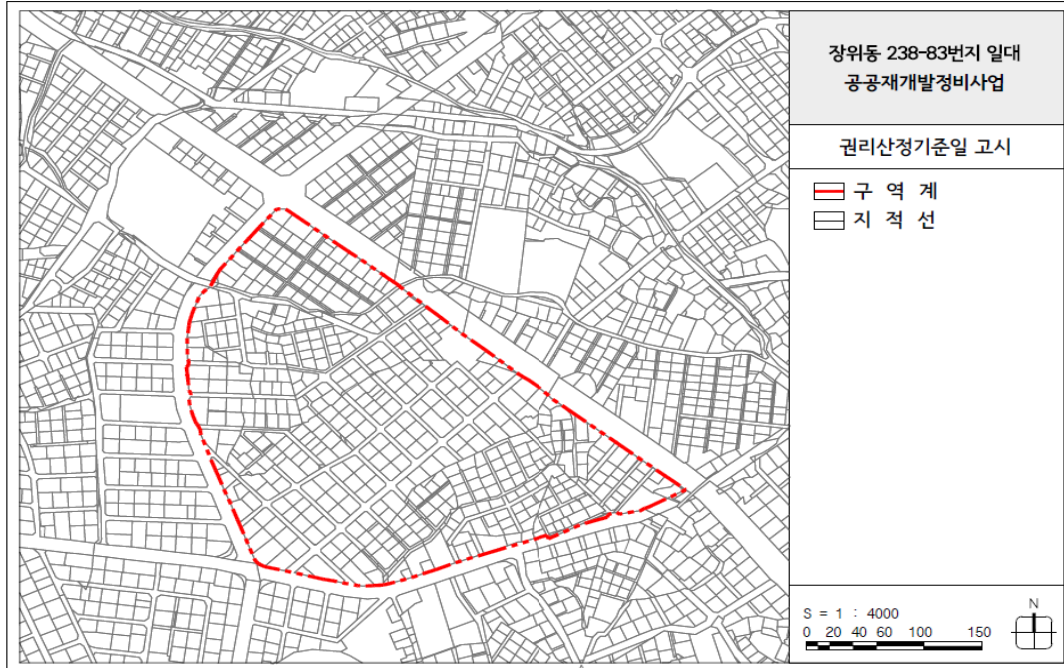
○ 성북1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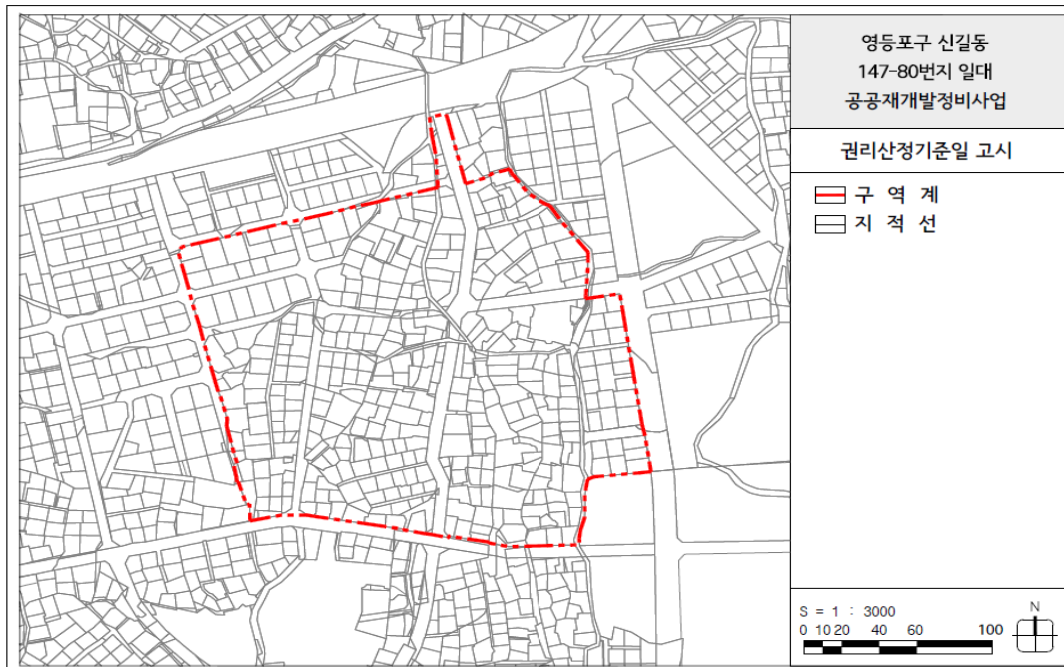
○ 장위8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 장위9 (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 신길1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984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3 월 30 일
서울특별시 장

1. 지정지역 : 공공재개발 후보지 904,270㎡

시도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계			904,270	
	노원구	상계3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104,000	
	강동구	천호지A1-1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26,549	
	동작구	본동	본동 47번지 일대	51,696	
	성동구	금호23	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	30,706	
	종로구	송인동 1169	송인동 1169번지 일대	14,157	
	양천구	신월7동-2	신월7동 941번지 일대	90,346	
	서대문구	홍은1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11,466	
	서대문구	충정로1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8,075	
	서대문구	연희동721-6	연희동 721-6번지 일대	49,745	
	송파구	거여새마을	거여동 551-14번지 일대	63,995	
	동대문구	전농9	전농동 103-27번지 일대	44,878	
	중랑구	중화122	중화동 122번지 일대	37,662	

시도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성북구	성북1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109,336	
	성북구	장위8	장위동 85번지 일대	116,402	
	성북구	장위9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85,878	
	영등포구	신길1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59,379	

2. 지정기간 : 2021년 4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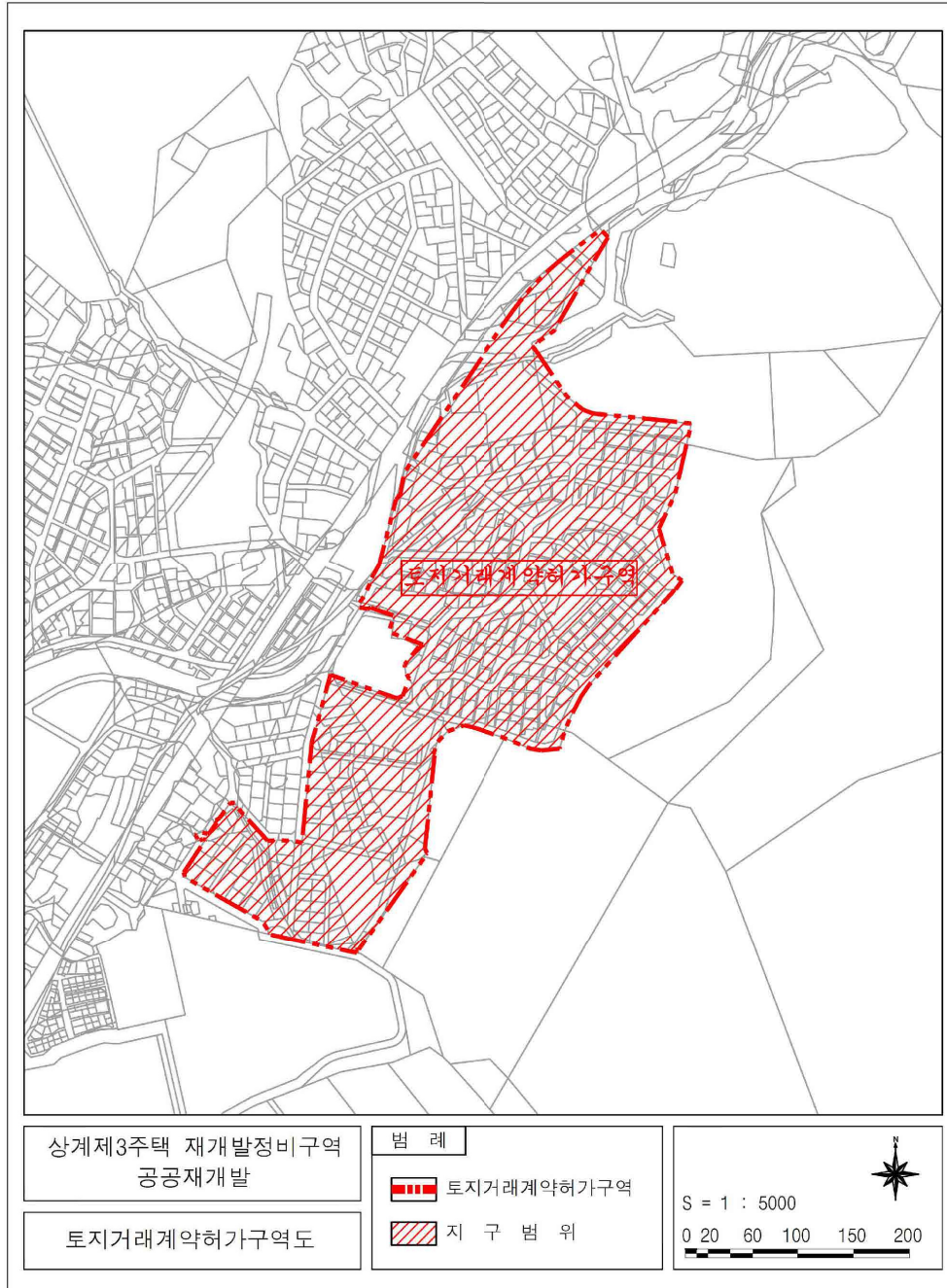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초과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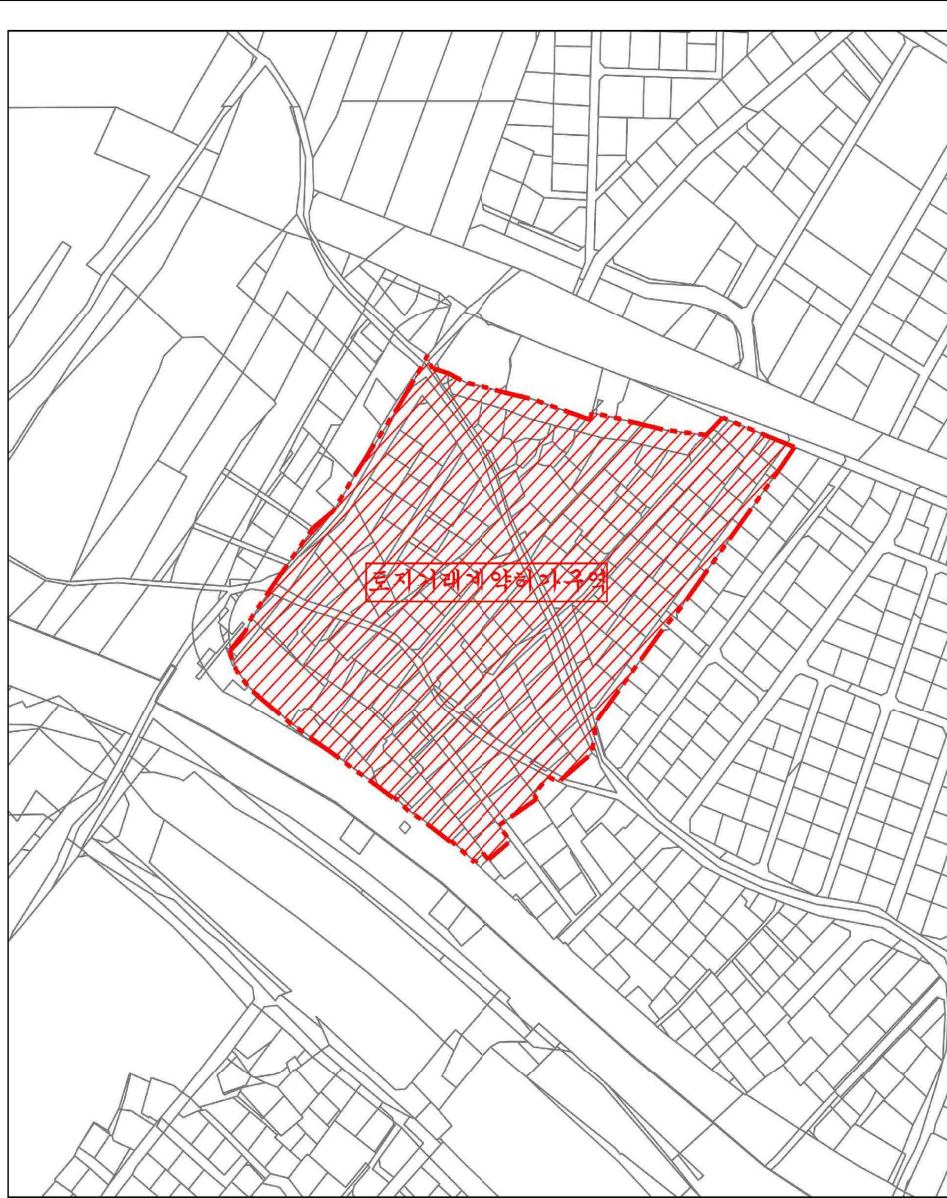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별첨1 지역별 세부 지형도

○ 노원구 상계3



○ 강동구 천호지A1-1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A1-1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재개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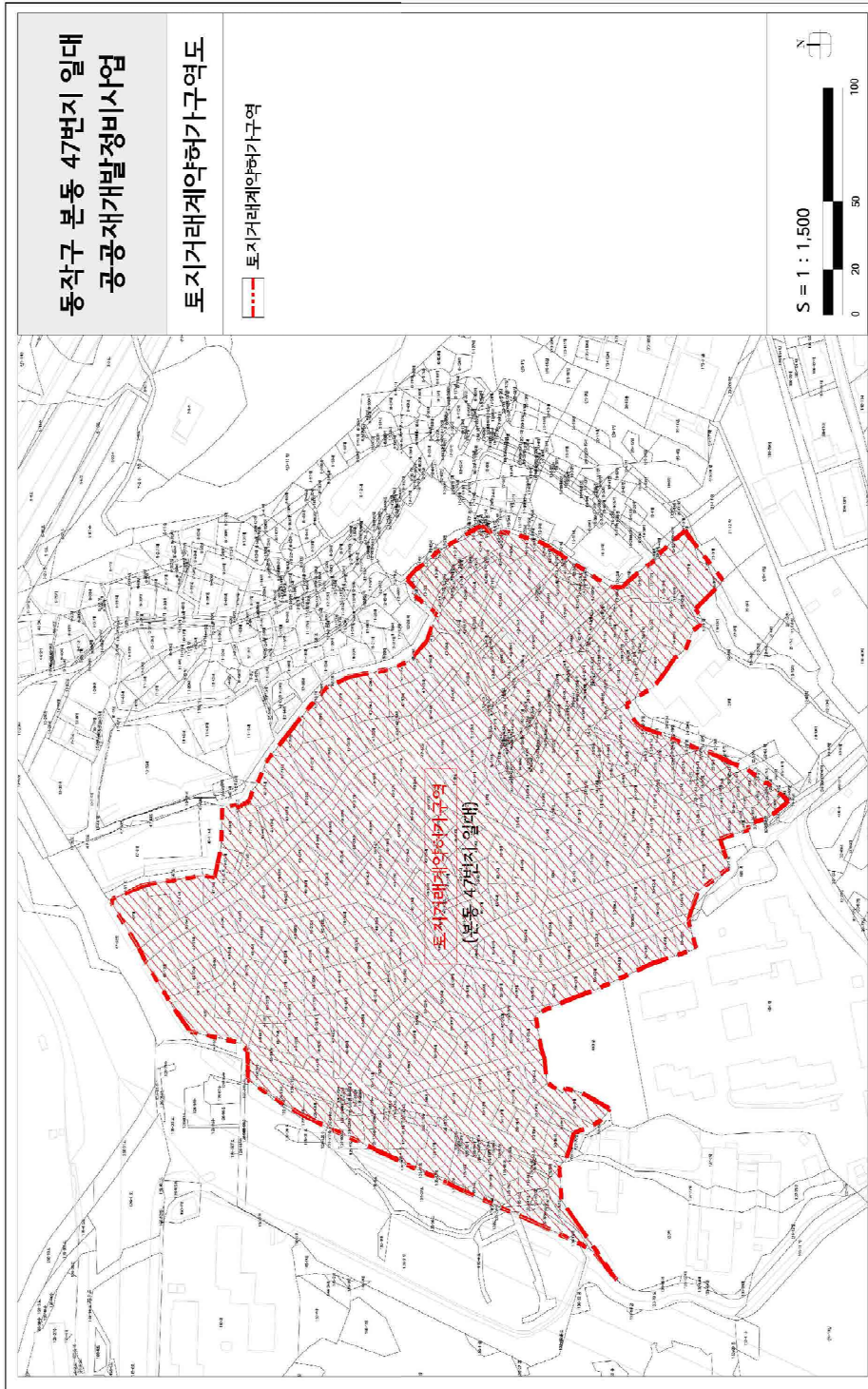
 지구범위

S = 1 :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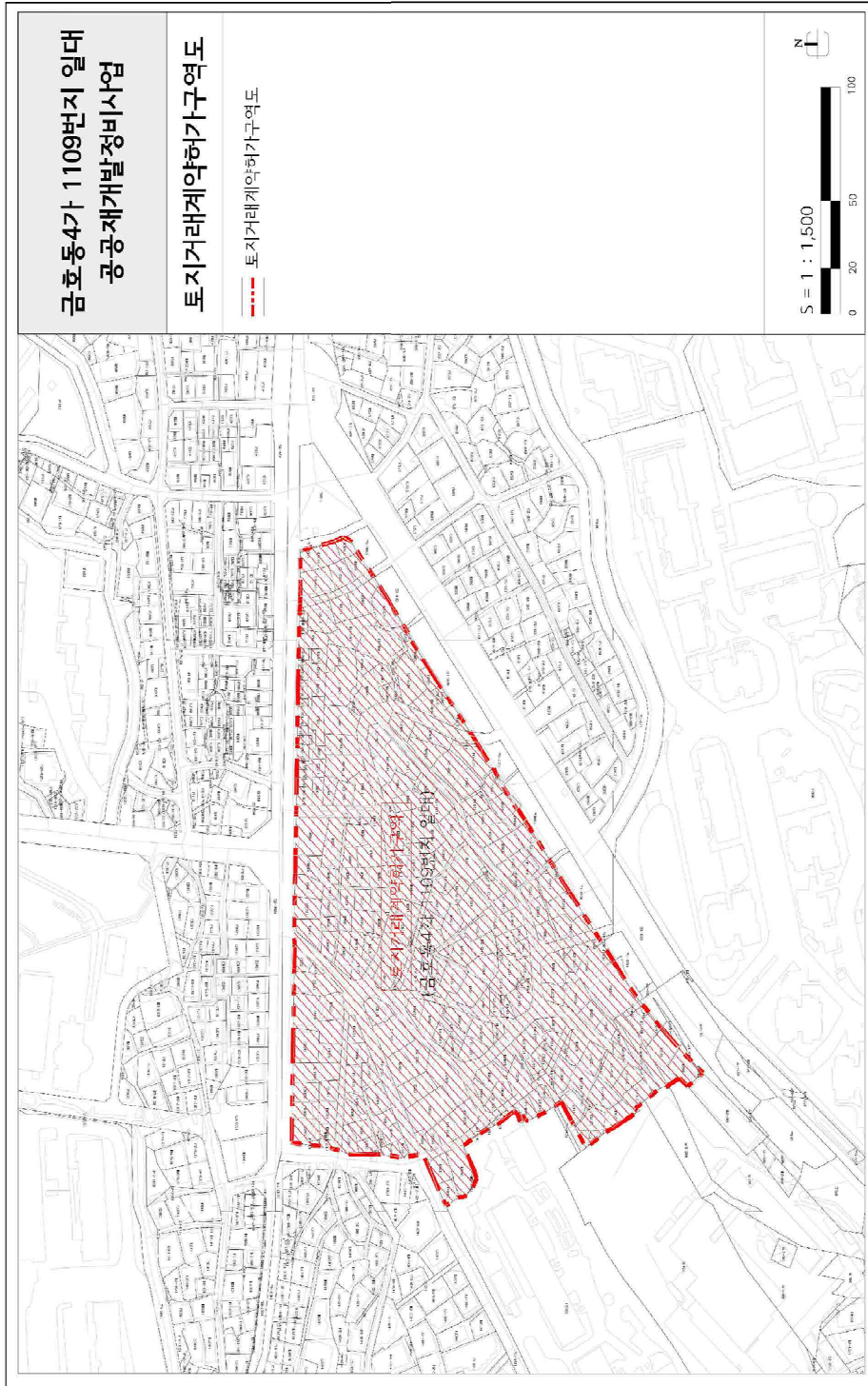
0 10 20 40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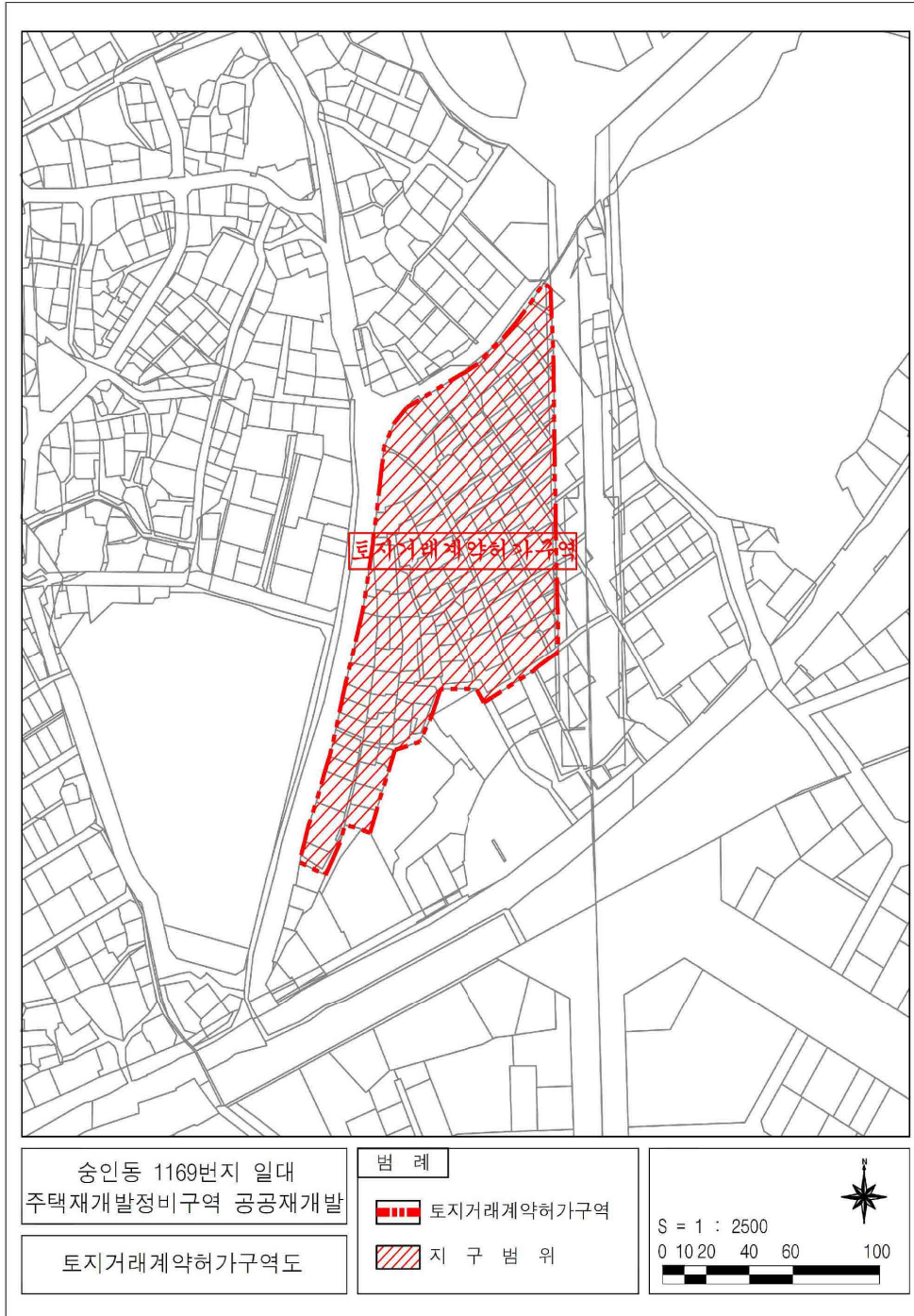
© 작곡가 박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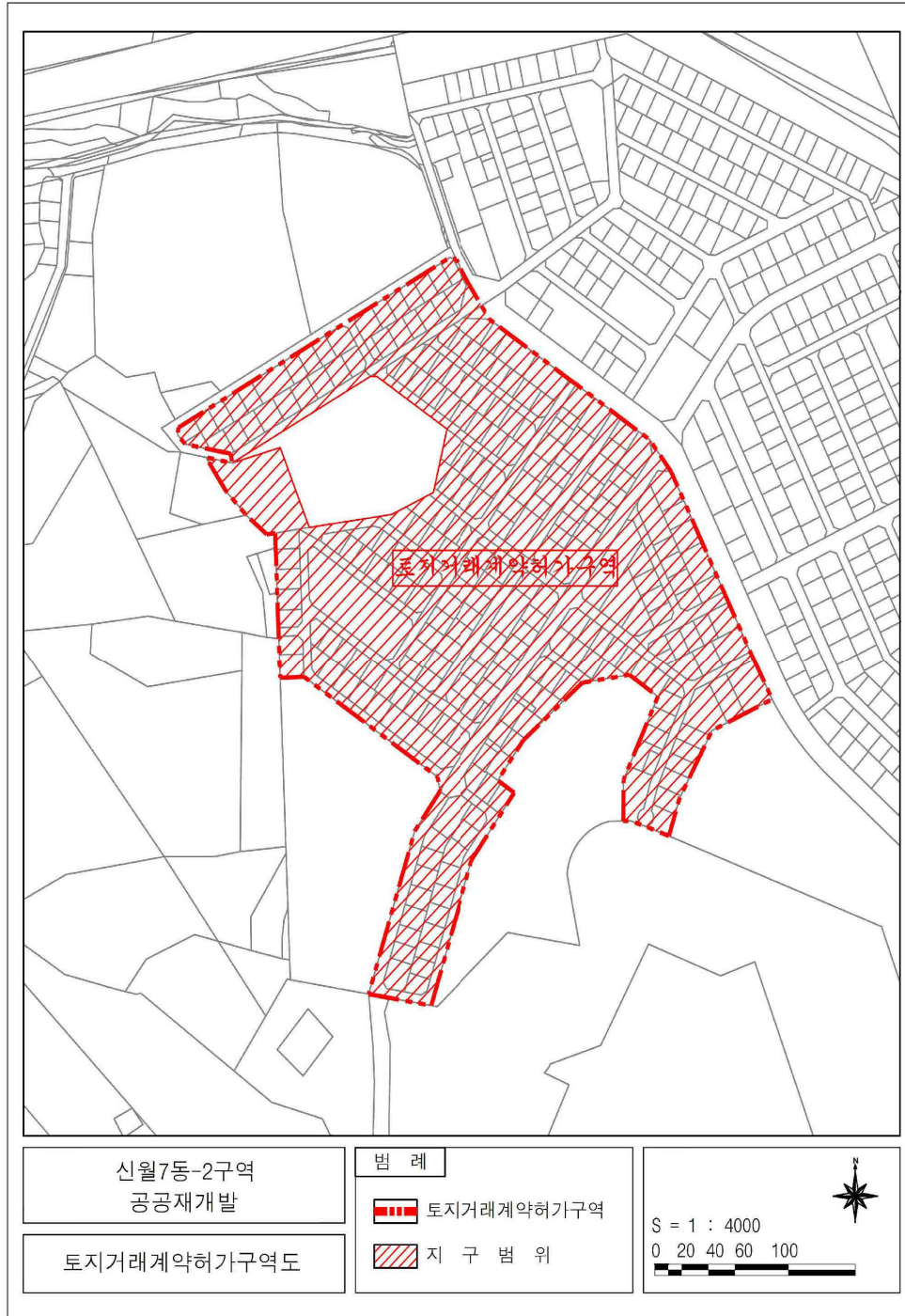
○ 성동구 금호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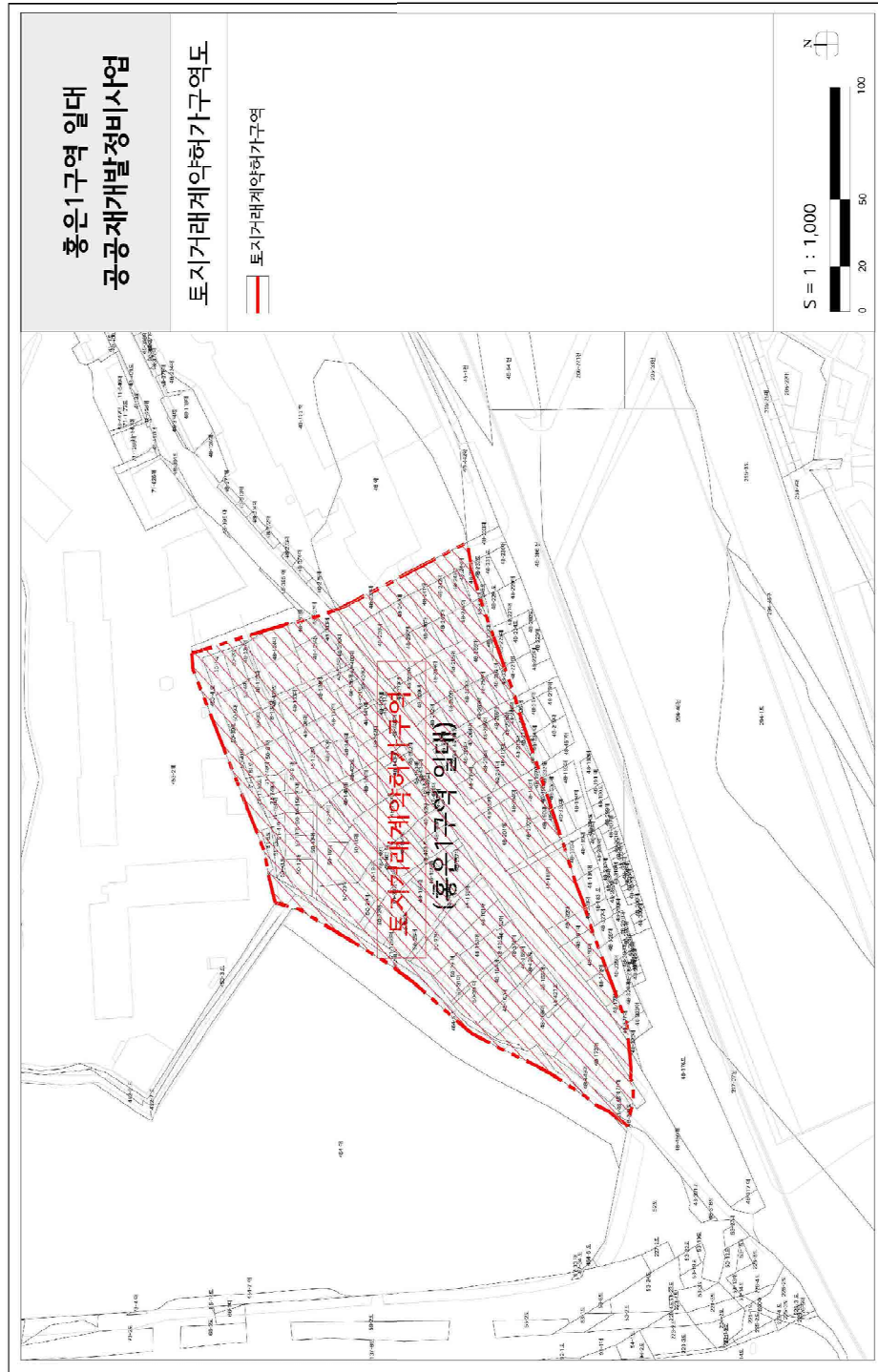
○ 종로구 송인동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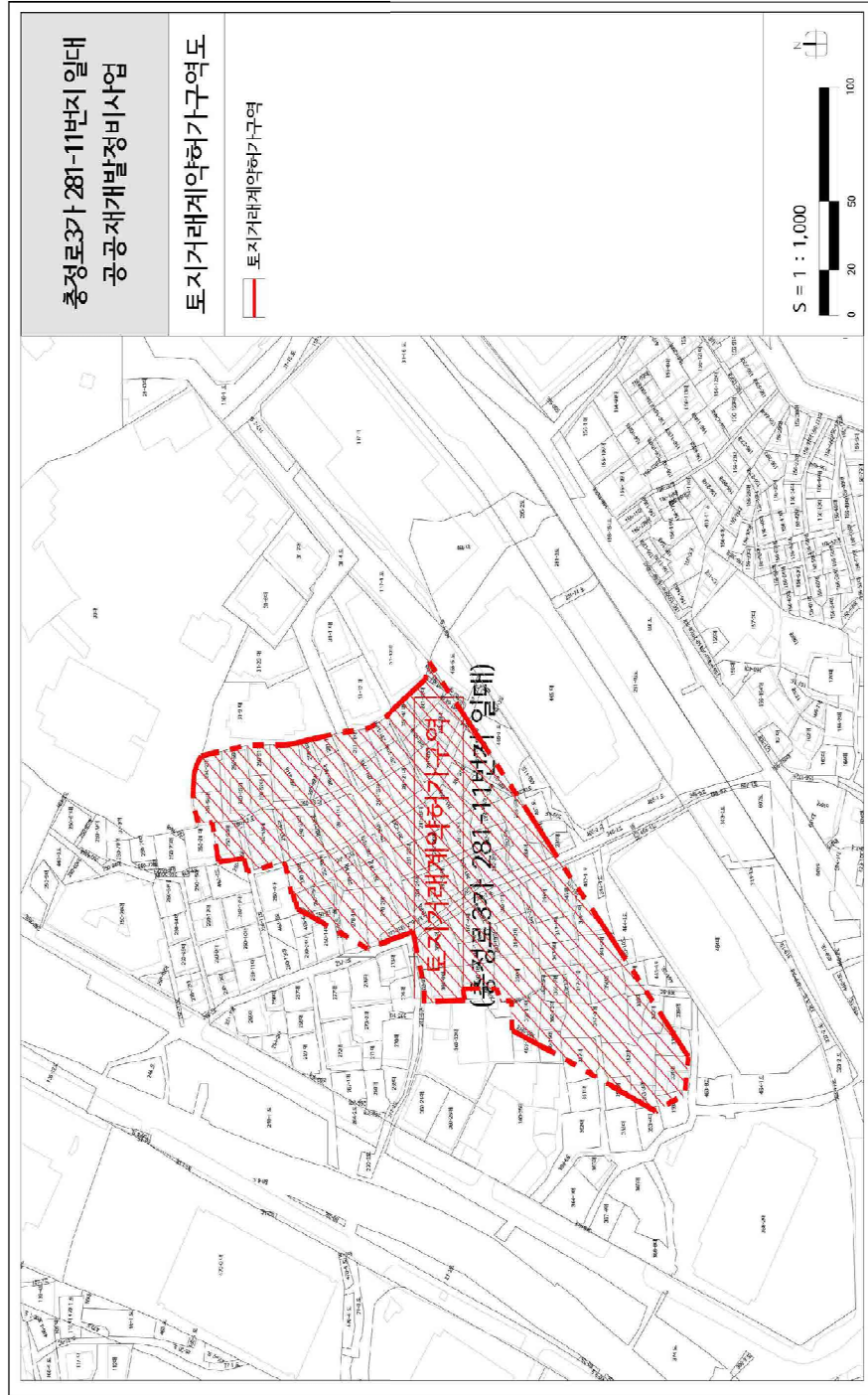
○ 양천구 신월7동-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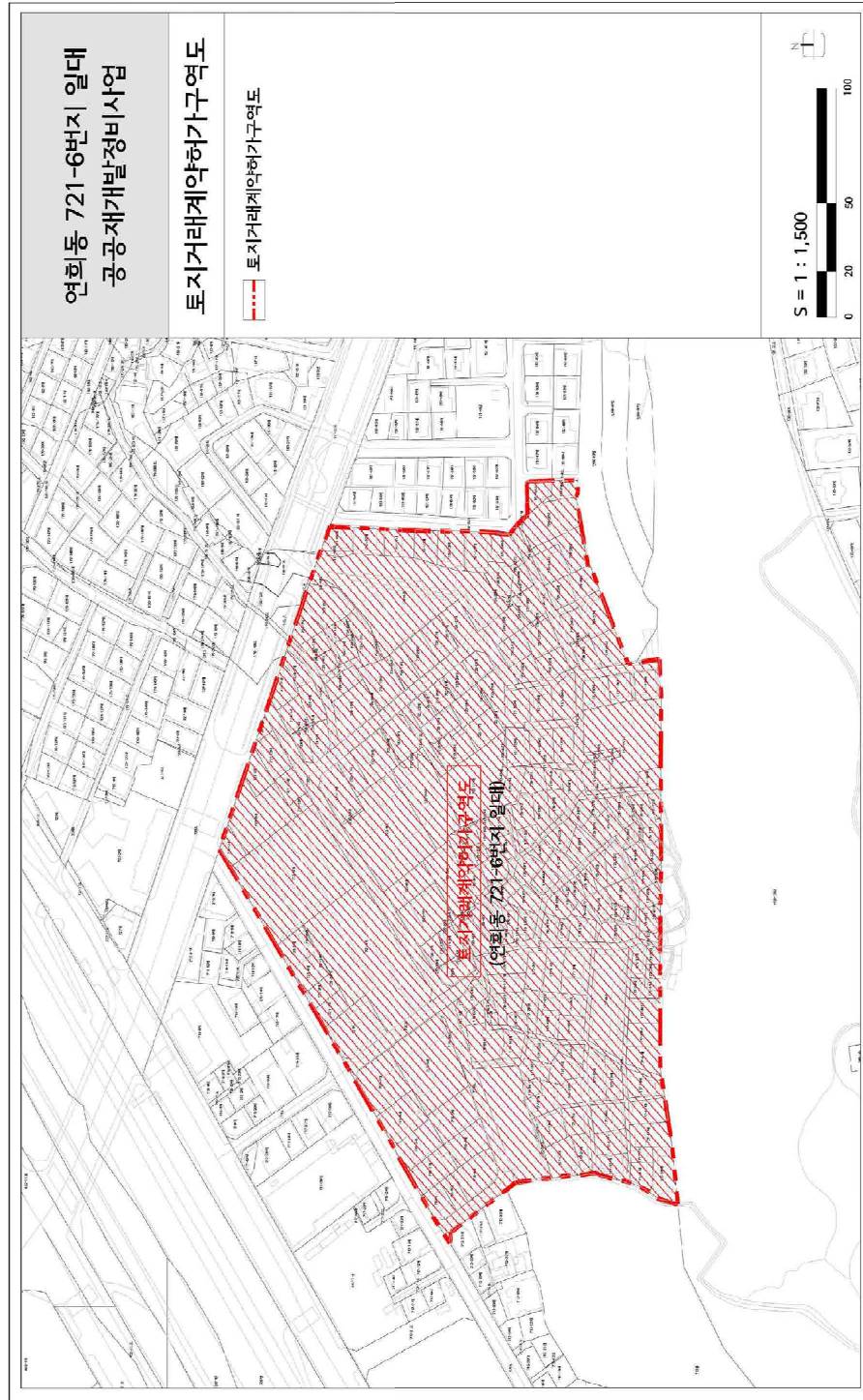
◎ 서대문구 홍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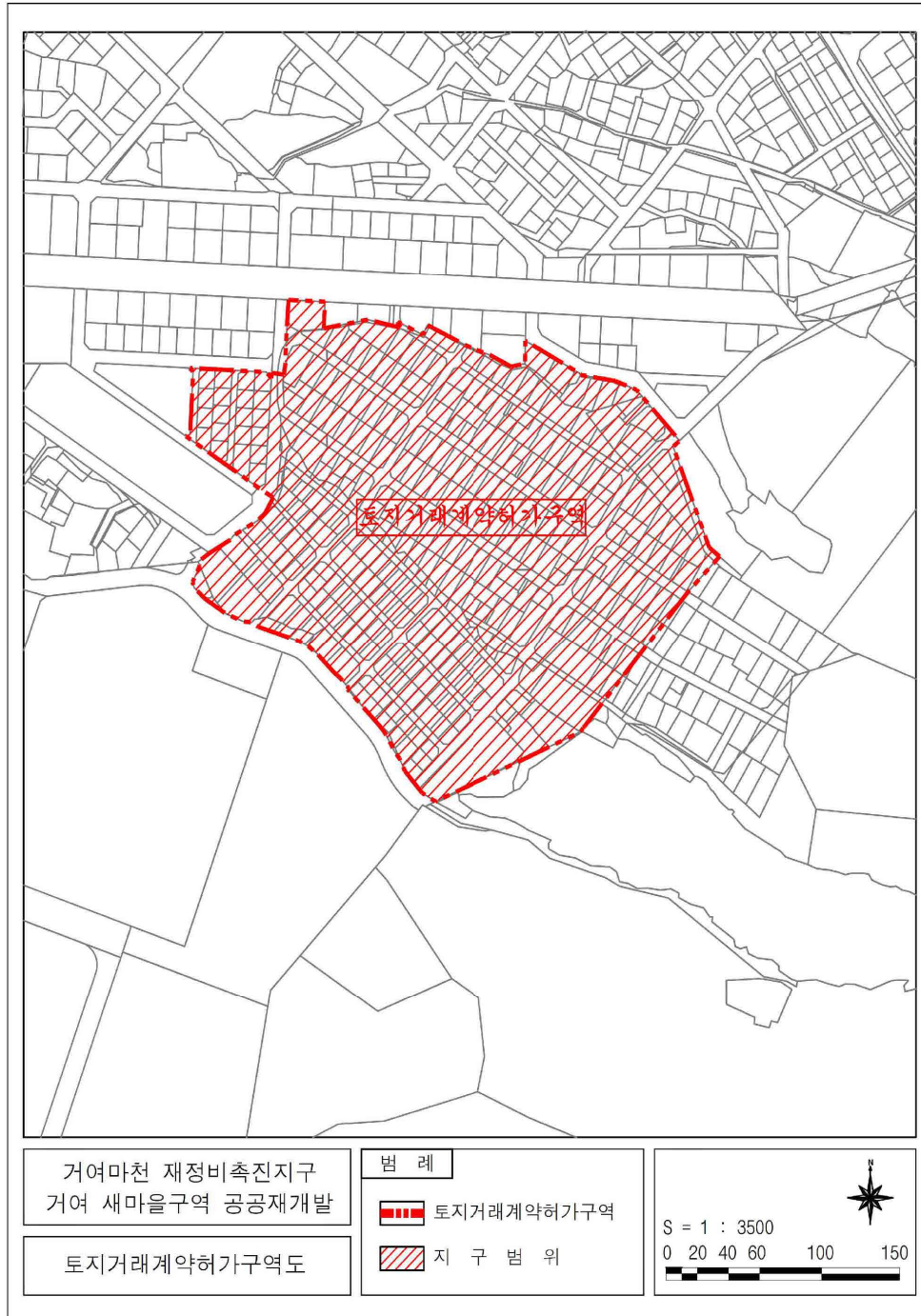
◎ 서대문구 중정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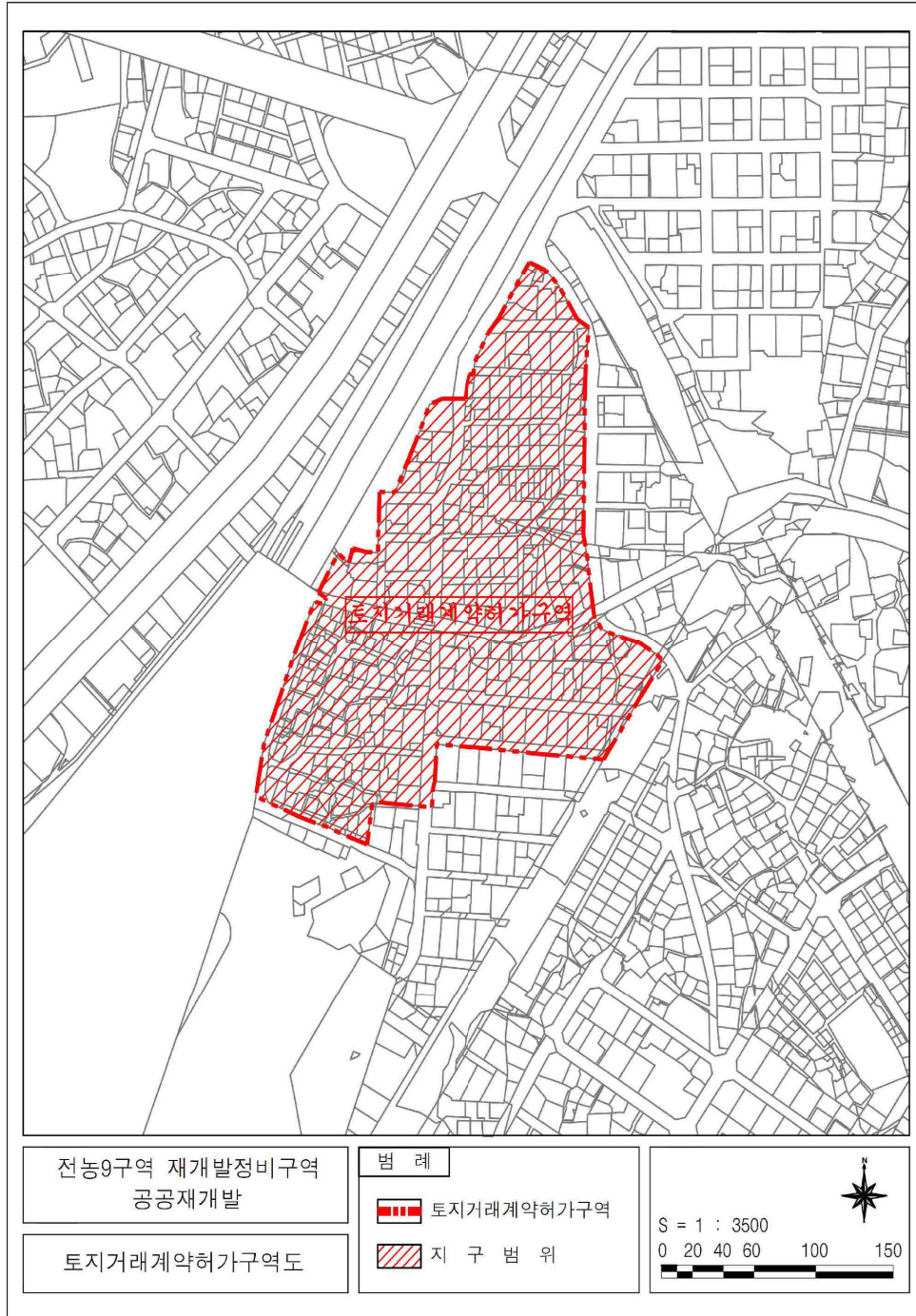
○ 서대문구 연희동7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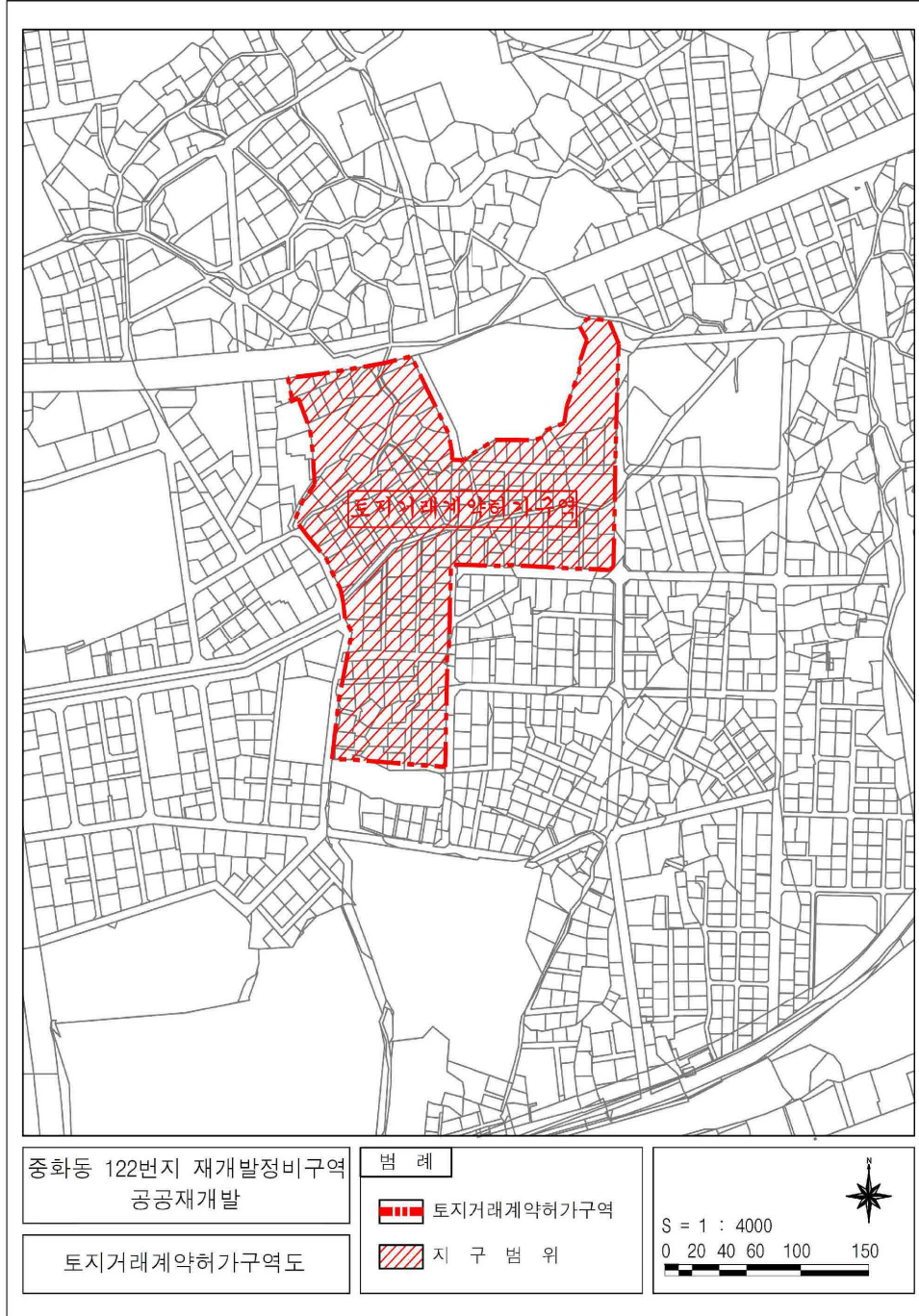
◎ 송파구 거여새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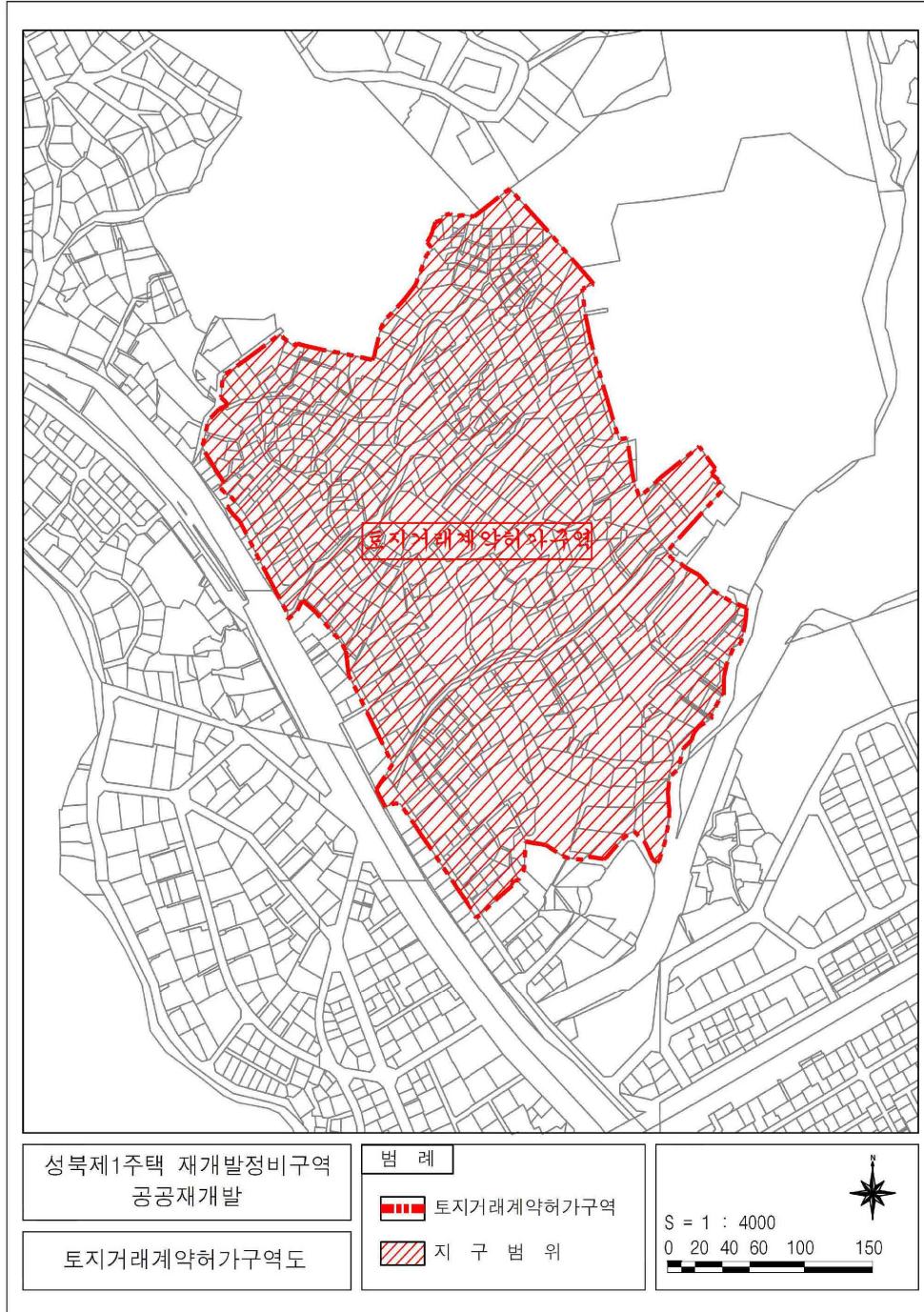
◎ 동대문구 전농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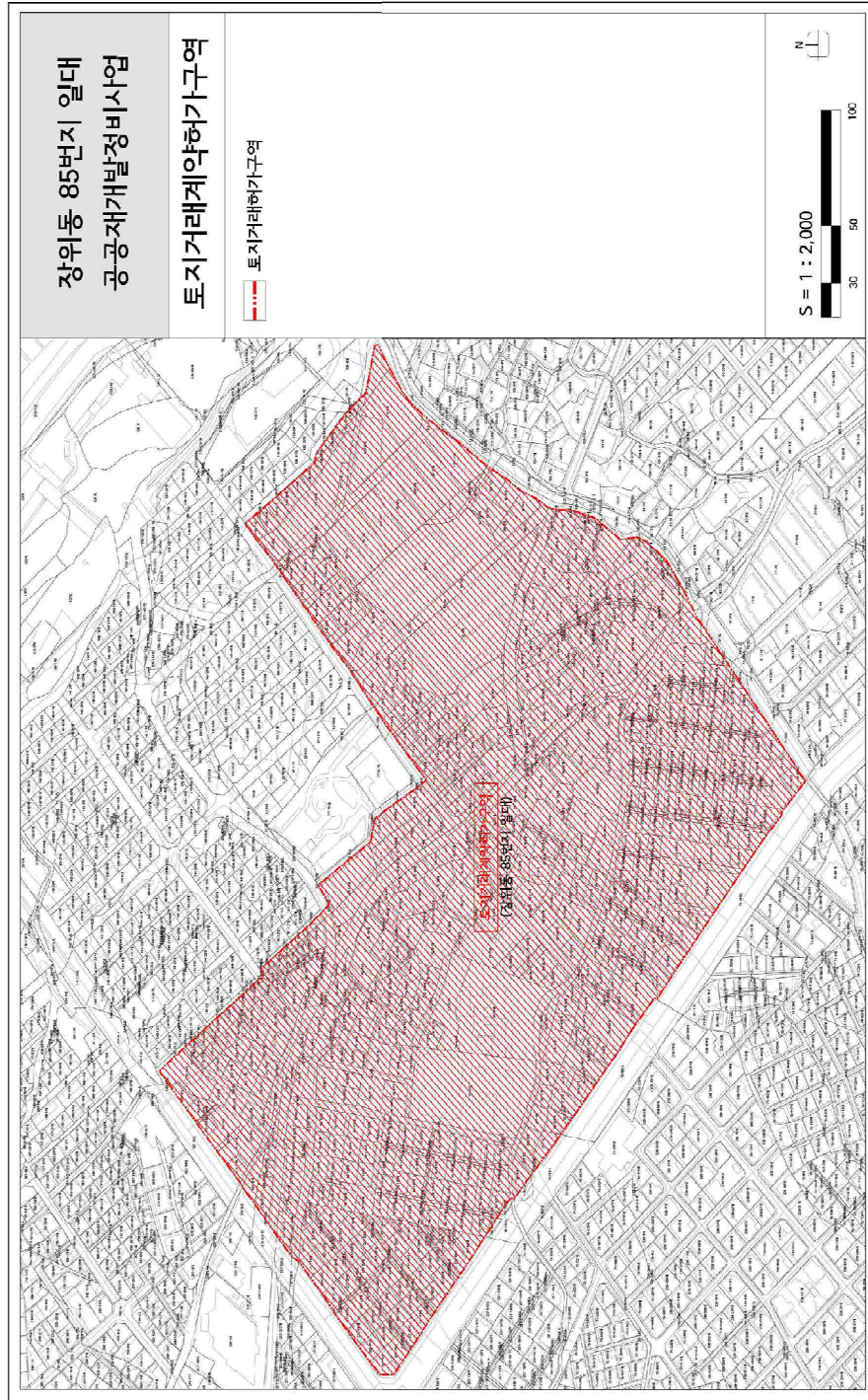
◎ 중랑구 중화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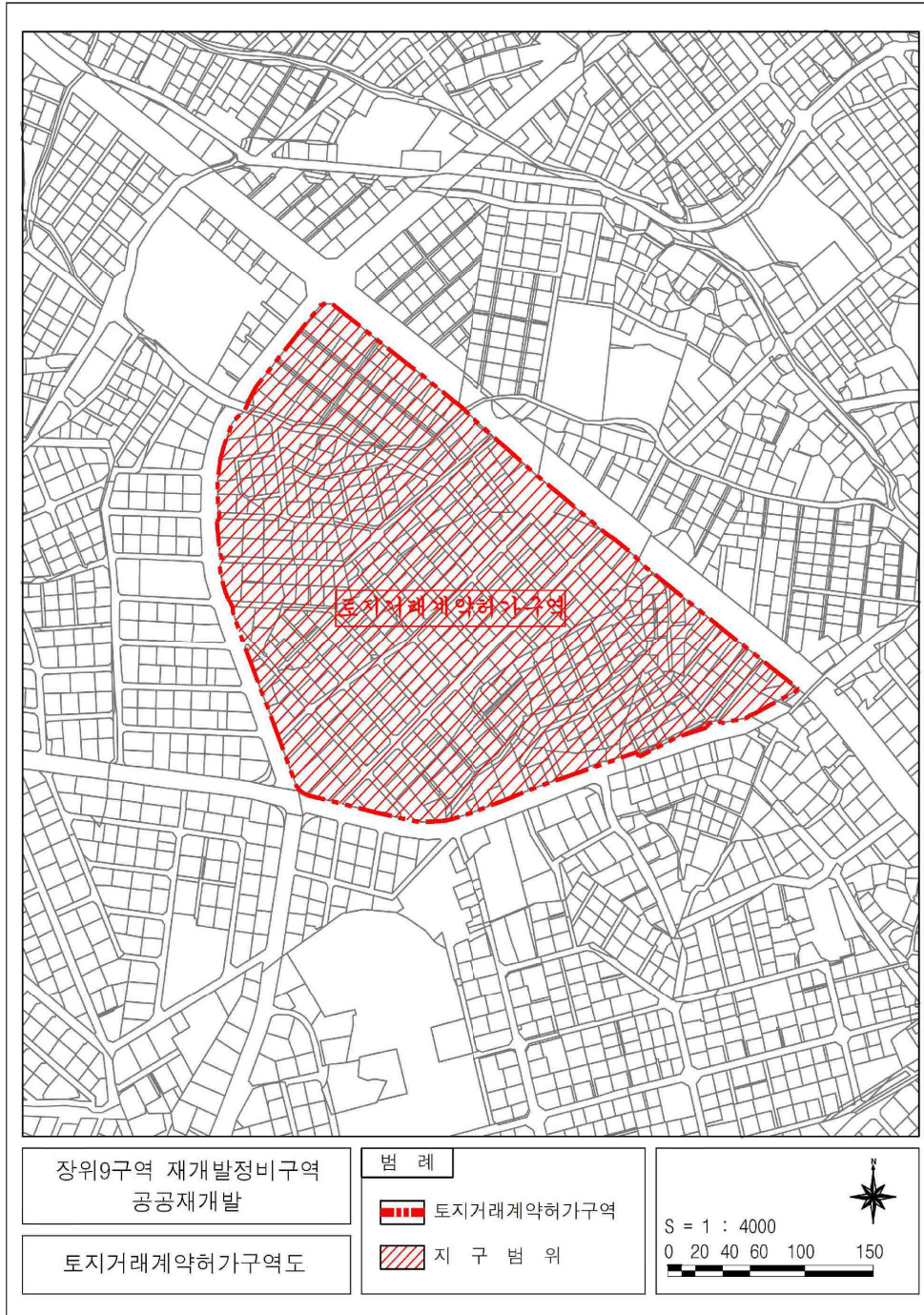
◎ 성북구 성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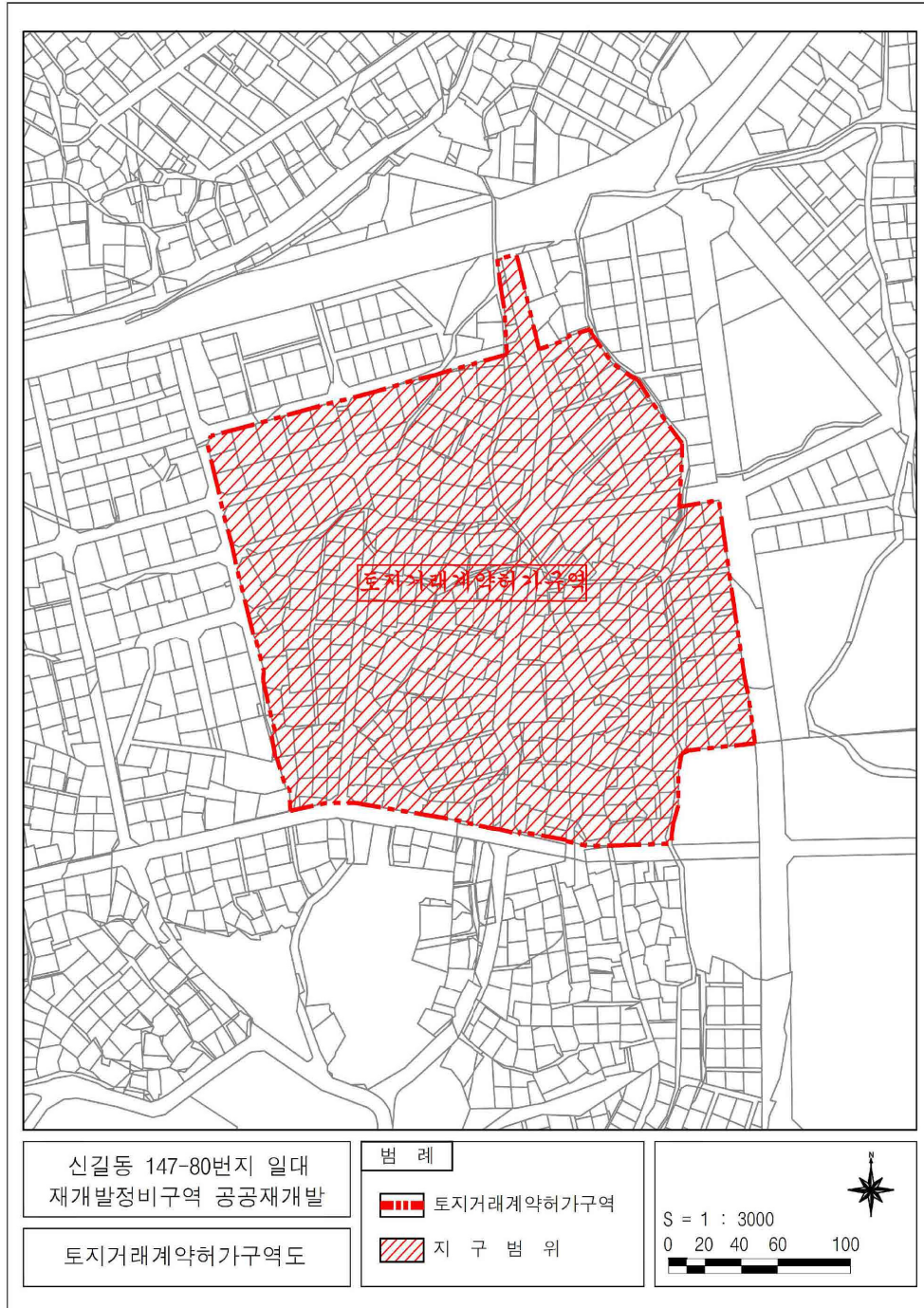
© 성복구 장위8



○ 성북구 장위9



○ 영등포구 신길1



구 고 시

◆ 은평구고시 제2021-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8호(2006.12.28.)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4호(2016.4.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8호(2020.4.16.)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포함)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1-293호(2021.2.18.)로 실시계획 열람 공고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6-40번지 일원(폐기물처리시설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2) 명 칭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1,535.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은평구청장
- 2)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3. 10.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02-351-7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율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은평구 진관동	73-27	답	2,118	1,226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2	은평구 진관동	74-22	도	1,079	41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3	은평구 진관동	74-30	답	3,204	1,548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4	은평구 진관동	75-9	답	255	255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5	은평구 진관동	76-18	답	1,679	644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6	은평구 진관동	76-39	답	985	936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7	은평구 진관동	76-40	답	696	613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76-20에서 분할 (2016.08)
8	은평구 진관동	76-41	구	507	475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9	은평구 진관동	77-38	답	115	70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0	은평구 진관동	78-12	답	188	188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1	은평구 진관동	78-13	답	1,164	1,164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2	은평구 진관동	78-14	답	93	93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3	은평구 진관동	78-20	구	223	223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4	은평구 진관동	404-14	전	424	424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5	은평구 진관동	404-15	도	1,295	191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6	은평구 진관동	404-16	도	335	87.9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17	은평구 진관동	404-17	답	3,494	3,357	서울주택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개포동)	-	-	-		
총 계				17,854	11,535.9							

주) 편입면적은 CAD 구적면적임

총 사업면적 11,535.9㎡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3-1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지 확정측량 면적임

※ 토지사용승낙서(11,535.9㎡, 2020.5.29.,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사용인(은평구청)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